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행위 강요 금지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26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행위 강요 금지 (안 제22조 및 제36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7.

다.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및 성매매 알선·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며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를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강요행위 금지 (안 제22조 및 제36조)

개정안은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36조(과태료) ① ----- ----- -----.
2의2. (생략) 3. (생략) ②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한 자</u> <u>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제1항제2호), ②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제1항제3호), ③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제1항제4호), ④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제1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²⁾ 준수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을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사항 중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처럼 현행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위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질서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①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④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객, 즉 ‘누구든지’를 그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일반 이용객 등 영업자가 아닌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처벌하고 있고, 유사업종인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 영업 등의 경우에도 노래연습장업과 마찬가지로 직접接客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강요한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다는 점⁴⁾⁵⁾을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노래연습장 및 유사업종 비교>

구 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적용법률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영업 등록	등록제	허가제	허가제
건축물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
허가가능 지역	전용주거 및 학교환경정화구역 제외	상업지역	상업지역
주류판매 가능여부	X	O	O
접대부고용 가능여부	X	X	O
업자에 대한 제재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등	허가취소, 영업정지명령 등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수준	주류판매, 청소년 출입 2년/2천만원 접대부, 성매매 관련 3년/3천만원	준수사항 위반 3년/3천만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	
이용객 등 영업자 외의 사람까지 포괄(누구든지)			
接客행위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알선	1년/3백만원	1년/1천만원	-
준수사항 강요에 대한 제재	X	X	X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接客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接客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아울러, 「형법」 제12조⁶⁾에서는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4조⁷⁾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의 강요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질서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업종에는 없는 규제가 노래연습장에만 도입될 경우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7)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